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산정보과

(2016. 10.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4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일(화)

##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 11조(인력 확보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제출이유 >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방범용 CCTV 관제 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가. 민간위탁의 목적

- (1) 현재 운영 중인 근무 체계로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주말, 휴일 관제의 공백 시간이 발생함에 따라 365일 24시간 관제 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함
- (2) 지하1층에 별도 위치한 관제실 근무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으며, 근무인원의 결원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인력 총원이 어려움
- (3) 따라서, 방범용 CCTV 관제사무 수행실적이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탄력적 인력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민간위탁의 내용

- (1) 위탁 기간 : 2017. 1월 ~ 12월
- (2) 위탁업체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3) 민간위탁 범위 : CCTV 관제인력 운영 전반
  - 근무 장소 : 마포구청 지하1층 통합관제실
  - 근무 인원 : 6명 (3조 2교대)
  - 근무 내용
    - 통합관제실 내 CCTV 모니터 상시관제
    - 범죄 등 각종 긴급사항 발생 시 경찰관에게 신속보고 등

다. 소요예산 : 224,576천원(구비)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내 마포구청사 지하 1층의 방법용 CCTV 관제실 근무 방식은 현재 주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 6시까지, 야간은 평일 및 토요일 20시~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자가 없는 평일 오전6시~오전9시까지/오후6시~오후8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법 사각지대로 남게 되어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바, 상시 24시간 매일 방법용 CCTV 관제가 가능한 근무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이 분야에 전문적이고 우수한 운영 실적이 있는 방법용 CCTV 관제 우수업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 방법용 CCTV 운영현황

현 행

#### ▷ 목적별 CCTV 설치대수

( '16. 10월 현재, 단위 : 개소)

합 계	방법용 (574개소)			경찰 방법용	그린 파킹	시설관리 (316대)			불법 주정차 단속
	주택가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관 리	펌프장 관 리	문화재 관 리	
987	391	85	98	12	18	232	76	8	67

#### ▷ 방법용 CCTV 관제(운영)요원 현황

- 근무인원 : 총 11명

구 분	근무인원	근무시간	비 고
기간제 근로자	5명	· 주간(2명): 09:00~18:00, 주5일(월~금)	토·일·공휴일 휴무
		· 야간(3명) : 20:00~06:00, 주4일(월~토, 2일 근무 1일 휴무)	일·공휴일 휴무
장애인복지일자리	2명	· 09:00~12:00, 주5일(월~금)	토·일·공휴일 휴무
경 찰	4명	· 24시간 2교대	공휴일 무관

- 근무 장소 : 마포구청 지하1층 통합관제실
- 근무내용 : 방법용 CCTV 모니터링 업무(경찰업무 보조)

## 변경

### ▷ **방법용 CCTV 관제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

가. 용역명 : 2017년 방법용 CCTV 관제 용역

나. 용역기간 : 2017. 1월 ~ 12월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근무인원 : 6명 (3조 2교대)

마. 근무내용

- 마포구 통합관제실 내 방법용 CCTV 모니터 상시 관제
- 범죄 등 각종 긴급사항 발생 시 경찰관에게 신속보고 등

바. 소요예산 : 224,576천원(구비)

- 산출내역 : 3,119,110원\*12개월\* 6명 = 224,575,920원

-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 위탁 사무에 속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同) 조례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간 선정 전에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방법용 CCTV 관제 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구청사 지하 1층 통합관제실 근무현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5명과 경찰관등 11명이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574개소에 대한 방법용 CCTV 관제업무를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오전6시~오전 9시까지 / 오후6시~오후8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기간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바,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행 기간제 근무방식을 1년 365일 24시간 방법용 CCTV 관제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관제업무실적이 있는 전문 우수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기간제 근무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을 비교해 보면 현행 기간제 근무방식은 근무인원은 5명이고, 근무시간은 주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 6시까지, 야간은 평일 및 토요일 오후 8시~다음 날 6시까지 하고, 방범용 CCTV 관제비용은 1억 1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특히 범죄 발생률이 높은 주말, 공휴일 관제 업무의 공백으로 범죄발생 시 즉각적인 대책이 어렵고, 또한 기간제 근무자의 근무인원 결원 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변경하려는 민간위탁 근무방식은 근무인원은 6명으로 365일 24시간 관제업무할 수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어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민간위탁 운영 비용이 2억 2,457만 6천원으로 비용면에서 기간제 근무방식보다 예산이 1억 1천 400여 만원이 더 소요되지만 민간위탁 근무방식이 365일 24시간 방범용 CCTV 관제업무를 할 수 있어 현행 기간제 근무방식보다 안전하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방범용 CCTV 관제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행정자치부 : 2011.6. )

제11조(인력 확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24.] (제정) 2008.12.11 조례 제725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전에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문화·관광·방송·영상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교육·도서관·체육·공원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교통, 주차, 부설주차장 등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참 고 자 료

## 타 구 관제요원 채용현황

구 분	해당 자치구	비 고
용역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6)	
기간제	중구,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5)	
임기제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4)	